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82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4월 22일

-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소방본부장 장거래)

가. 제안이유

-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전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-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에 관한 사항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 노형우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2조는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을 충청북도의 재정여건과 소방의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※ 최근 4년간 정책사업비 전입금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4년평균
전 입 금	9,355	11,905	1,231	20	5,628
보 통 세	839,999	1,027,688	1,189,926	1,164,724	1,055,584
전입비율	1.114%	1.158%	0.103%	0.002%	0.594%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- 입법예고('21. 3. 5.~'21. 3. 25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전입금액의 규모를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입금액)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제3조(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는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」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소방재정지원 및 소방특별회계설치법

[법률 제16771호, 2019. 12. 10., 제정]

제6조(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
2. 제7조에 따른 시·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4.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5.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,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
6.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
7. 그 밖의 수입금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소방재정지원 및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31025호, 2020. 09. 22., 제정]

제5조(시·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“시·도”라한다)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(이하“소방특별회계”라 한다)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: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
2.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: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·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

나. 도(경기도는 제외한다)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: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(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) 이 영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 [법률 제17768호, 2021. 1. 1., 일부개정]

제7조(지방세의 세목)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득세
2. 등록면허세
3. 레저세
4. 담배소비세
5. 지방소비세
6. 주민세
7. 지방소득세
8. 재산세
9. 자동차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단서 생략)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「소방재정 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.

2. 비용 발생 요인 :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 계정의 재원

3. 관련조문

- 제2조(전입금액) 「소방재정지원 및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

나. 추계의 전제 : 연도별 보통세 대비 정책사업비 전입비율

다. 추계의 결과 : 최근 3년간 정책사업비 전입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4년 평균
전 입 금	9,355	11,905	1,231	20	5,628
보 통 세	839,999	1,027,688	1,189,926	1,164,724	1,055,584
전 입 비 율	1.114%	1.158%	0.103%	0.002%	0.594%

※ 정책사업비 산출 : 일반회계전입금 - 인건비(보수, 성과상여금, 직급보조비)
전입비율 = 정책사업비 전입금 / 보통세

라. 재원조달방안 : 보통세(일반회계 전입금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예측불가(後년도 정책사업비 판단 곤란)

6. 작성자 :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임병수